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1
----------	-----

□ 제안이유

-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삭제로 민원인 편의제공 등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제명변경(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법령 용어·정비 및 규제완화 (면제할 수 있다 → 면제한다)
- 민원인의 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조항 삭제

□ 칙 부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중 “시험조사”를 “시험·조사”로 한다.

제5조중 “별표1에 의거”를 “별표1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부공문서 규정”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수수료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p> <p>.....</p> <p>..... 시험 · 조사</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내수면 양식대상 어종에 따른 적지 여부와 수산용수로서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시험 · 조사.....</p> <p>.....</p> <p>..... 시험 · 조사</p> <p>.....</p>			
<p>제5조(수수료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거 수수료를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조(수수료정수) 별표1에 의한</p> <p>.....</p>			
<p>제6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새마을 양식계에서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시험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6조(수수료의 면제) 면제한다.</p> <p>.....</p>			
<p>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 시험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은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 제3호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출장공무원의 여비(이하“여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p> <p>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새마을 양식계에서 양식어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0조(처리절차) 이 조례에 관한 업무처리는 별표3의 절차에 의하여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처리절차).....</p> <p>.....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p> <p>.....</p>			
<p>제11조(결과의 통지) ①장장은 시험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장 적지조사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한다.</p> <p>②(생략)</p>	<p>제11조(결과의통지) ① 10일.....</p> <p>.....</p> <p>②(현행과 같음)</p>			